

헌혈 기준 안내

신분확인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등)
- 고교생 신분확인 : 사진대장 또는 명렬표
- 신분증이 없어 신분확인이 되지 않은 경우 헌혈에 참여할 수 없음

헌혈 전 몸상태

- 저비중, 일시적 저혈압 및 고혈압, 피로, 수면부족, 숙취, 발열, 공복, 음주 여부 확인
- 헌혈 당일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헌혈 전 상담 실시
- 감기 : 증상 소실 후 가능, 약 복용시는 헌혈 전 상담 실시
- 독감 등 열성질환인 경우 완치 1개월 후 가능

약 복용

- 가능 : 수면제, 제산제, 멜라닌클리어, 글루코사민, 인삼, 비타민, 소화제, 미네랄 등
- 당일 보류 : 두통약, 소염제, 구충제(예방목적) 등
- 3일 보류 : 아스피린, 감기 치료 목적의 항생제 등
- 1주일 보류 : 항생제, 구충제(치료목적), 보톡스, 항진균제 등
- 아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헌혈 전 반드시 상담 실시
: 여드름치료제, 건선치료제, 탈모치료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 기타 위에 설명되지 않은 약물이나 치료 목적으로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있는 경우 약의 성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헌혈 전 상담 실시

시 술

- 내시경(위, 대장) : 1개월 보류
- 귀뚫음 : 일회용을 사용한 경우 1개월 보류, 일회용이 아닌 경우 1년 보류
- 부항, 뜸, 침 : 일회용인 경우 3일 보류, 일회용이 아닌 경우 1년 보류
- 문신(반영구문신 포함) : 의료기관 시술시 1개월 보류, 비의료기관 시술시 1년 보류

예방접종

예방접종 종류	보류기간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동물에게 물린 후 공수병(광견병), 국내 허가받지 않은 예방접종	1년
비강 흡입 인플루엔자 생백신,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홍역, 수두, BCG접종, 상처 후 파상풍, MMR	1개월
B형간염	3주
황열, 경구용 소아마비, 경구용 장티프스	2주
뇌수막염,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백일해, 주사용 소아마비, 예방목적의 광견병, 유행성 독감,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자궁경부암, 장티프스, 콜레라, 탄저병, 파라타이포이드, 파상풍, 페스트, 폐렴, A형간염	24시간

국내 말라리아지역 여행

- 말라리아 지역
 - 경기도 :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 인천 : 강화군, 옹진군, 영종도 - 강원도 : 철원군,
 - 북한 : 백두산 제외 전 지역 (금강산관광객은 불가능)
- 1일 이상 ~ 180일 미만으로 여행, 연수 등으로 숙박한 경우
 - : 1년이 경과해야 전혈헌혈이 가능 [숙박하지 않은 경우는 헌혈가능]
- 180일 이상 거주, 복무한 경우 : 2년이 경과해야 전혈헌혈이 가능

해외여행 여부

- 최근 1개월 이내 해외여행 : 1개월 보류
- 해외여행 지역에 따라 헌혈보류 사유 있으므로 헌혈 전 상담 필히 실시
- 말라리아 : 중국, 태국(푸켓 포함), 필리핀 시골지역,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앙코르와트) 등 동남아시아와 타 대륙(아프리카, 남아메리카)
-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인간광우병) : 영국 및 유럽 전역 등

위에 안내해 드린 내용 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헌혈 전 문진시 상담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혈 자원봉사인정 안내

자원봉사 인정 기준

- 시행일: 2010. 7. 1일 이후 헌혈부터 인정
- 인정시간: 전혈 및 성분헌혈 각 1회당 4시간 이상
- 연간 인정 횟수: 전혈 5회, 성분헌혈 24회 이내
- 인정기준: 헌혈자 본인만 인정

자원봉사 인증 기관 및 인증방법

- 인증기관: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 인증방법: www.vms.or.kr에서 인증
-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자동 부여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찾아 헌혈 횟수를 조회하여 4시간 인정 동의에 클릭하면 자원봉사활동 인정서 발급